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301

발의연월일: 2022. 4. 18.

발 의 자:김병욱·양정숙·장철민

김교흥 • 이동주 • 최인호

강병원 · 전재수 · 김정호

윤후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그 의무이 행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 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법률 제 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	6
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u>주권상장법인</u> 의 감사인은 이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	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	
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	
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